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5

발의연월일: 2020. 6. 15.

발 의 자:소병훈·고영인·정청래

용혜인 • 윤관석 • 김승남

안규백 · 홍성국 · 양정숙

유정주 • 노웅래 • 맹성규

최종윤 · 김진애 · 강득구

정일영 · 이재정 · 강은미

배진교 • 이용호 • 임종성

이낙연 · 한병도 · 권인숙

서동용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·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, 이에 따라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른 건 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,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

에서 심의·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 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5(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- 2.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- 5.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5조의6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 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의7(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) 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- 2. 시행계획의 수립.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조사, 연구 및 정책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- 4.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- 2.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다.
-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 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"를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5(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 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병향 2.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사항 3.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사항 4.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분야에서의활동 증진에 관한사항 5.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사항 6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하여 필요한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한후 제5조의7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의6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·시행 등) ① 여성가족부장

<신 설>

<신 설>

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 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의7(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)

- 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 족부장관 소속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-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

관한 사항

- 2.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조사,연구 및 정책의 분석・평가에관한 사항
- 4.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 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

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

 원
- 2.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 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 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

제22조(수탁 의무) 한부모가족복 지지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
	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	실
	무위원회를 둔다.	
	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	<u>실</u>
	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	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로
	<u>정한다.</u>	
4]	22조(수탁 의무)	
	<u>시·도지사</u>	